



보도자료

2021. 6. 14.(월) 배포



보도일	2021. 6. 15.(화) 국무회의 시작 시(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6. 15.(화) 국무회의 시작 시(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	교원정책과	담당자	과 장 윤소영 (☎ 044-203-6688) 사무관 정지은 (☎ 044-203-6940)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과 장 최기혁 (☎ 044-203-6199) 사무관 홍기욱 (☎ 044-203-6529)
	학교생활문화과	담당자	과 장 원용연 (☎ 044-203-6539) 교육연구관 팽주만 (☎ 044-203-6898)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과 장 이상돈 (☎ 044-203-6526) 사무관 박대선 (☎ 044-203-6531)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	과 장 최우성 (☎ 044-203-6285) 사무관 김재구 (☎ 044-203-6290)

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
- ◆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범위 구체화
-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기반 마련
- ◆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의견수렴, 실태조사 실시 기준 등 세부 규정 마련
- ◆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
- ◆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7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 - 【붙임】 참고 ㉠-1, 2

- 성 비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일정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이 개정(2020.12.22.공포, 2021.6.23.시행)되면서 그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정하였다.
 - ※ (담임 배제 기간) 파면·해임: 10년,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 5년
-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 - 【붙임】 참고 ㉠-3

-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2020.12.22.공포, 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내실 있는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우선 학교용지법의 대상으로 추가된 오피스텔의 세부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합리한 학교용지 확보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개정하였다.
 -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이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적용받게 되었다.
- 또한,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권자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 적절한 학교용지의 조성·공급을 통해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정확한 취학수요 파악을 통해 학교 과밀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붙임】 참고 ㉠-4

-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 시행을 위해,
 -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시행령에서는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 사유로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방학,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 방과후 등),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 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분리조치 실시 여부에 대한 교육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붙임】 참고 ㉠-5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교육청이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 내용의 세부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의거 서로 다른 급간의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초+중, 중+고, 초+중+고), 전국 119개교(2021.3.기준)

- 주요내용으로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 설문조사, 그 밖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였고,
 - 실태조사의 내용으로는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학교의 설비현황, 학생의 통학거리 등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이며
 - 실태조사의 세부기준은 관할청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완료 이후 30일 이내에 14일 이상 그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 【붙임】 참고 ㉠-6, 7

- 이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 기초·차상위계층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제고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한편,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 관련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

** 사해행위로 채무자에게서 벗어난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을 방지하여 학자금 지원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1.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2.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원정책과	과장 윤소영(6688), 정지은 사무관(694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최기혁(6199), 사무관 홍기욱(65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원용연(6539), 연구관 팽주만(689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이상돈(6526), 사무관 박대선(653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최우성(6285), 사무관 김재구(6290)



참고 1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순	법률안	주요내용
1	교육공무원임용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파면·해임의 경우 10년, 강등의 경우 9년 등으로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함
2	사립학교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파면·해임의 경우 10년, 정직의 경우 7년 등으로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함 • 징계 사유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2.22.)에 따라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 •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탄희(더) 45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가해자와 이미 분리된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개정('20.12.22.)에 따라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결과공개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 •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공청회,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 규정 • 통합운영학교 여건 파악에 필요한 실태조사내용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태조사 기준 마련 •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고 공개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함

순	법률안	주요내용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저소득층 학생은 기초·차상위 계층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 •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 추가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 추가

참고 2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세부내용

1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을 통해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정하고,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임 배제 징계처분) 담임 교원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성폭력범죄 등*로 규정하고,(제7조제7항 신설)

- * ①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②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행위

○ (담임 배제 기간) 담임 교원에서 배제하는 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5~10년)과 징계처분 기록 말소 기간을 고려하여, 파면·해임의 경우 10년, 강등의 경우 9년 등으로 정하였다.(제7조제8항 신설)

- * ① 파면·해임: 10년 ② 강등: 9년 ③ 정직: 7년 ④ 감봉·견책: 5년

☐ 동 개정으로 인해

○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원정책과	과장 윤소영(6688), 정지은 사무관(694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 ⑥</p> <p>(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법 제17조제3항에서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p> <p>⑧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p> <p>1. 파면·해임: 10년</p> <p>2. 강등: 9년</p> <p>3. 정직: 7년</p> <p>4. 감봉·견책: 5년</p>

2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정하고,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임 배제 징계처분) 담임 교원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성폭력범죄 등*로 규정하고,(제27조제1항 신설)

- * ①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 ②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행위

○ (담임 배제 기간) 담임 교원에서 배제하는 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5~10년)과 징계처분 기록 말소 기간을 고려하여, 파면·해임의 경우 10년, 정직의 경우 7년 등으로 정하였다.(제27조제2항 신설)


- * ① 파면·해임: 10년 ② 정직: 7년 ③ 감봉·견책: 5년

○ (전문가 의견 청취) 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25조제7호 신설)

- * ①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 ②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행위

동 개정으로 인해

○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교원정책과	과장 윤소영(6688), 정지은 사무관(694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u>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1. ~ 6.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u>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u></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징계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다만, 본문에 따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 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u></p> <p>제2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u>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1. 「<u>교육공무원법</u>」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2. 「<u>양성평등기본법</u>」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p> <p>②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u>”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p> <p>1. <u>파면·해임: 10년</u></p> <p>2. <u>정직: 7년</u></p> <p>3. <u>감봉·견책: 5년</u></p>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의 범위를 규정하고,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 공급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피스텔의 범위 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2.22.)에 따라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제1조의2 신설)

- 이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 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하였다.(제4조의3 신설)

□ 동 개정으로 인해

○ 적절한 학교용지의 조성·공급을 통해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정확한 취학수요 파악을 통해 학교 과밀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최기혁(6619), 홍기욱 사무관(6529)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② ~ ⑤ (생략)</p> <p><신설></p>	<p>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p> <p>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일 것</p> <p>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것</p> <p>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3(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p>

현행	개정안
<p><u>제4조의3</u> (생략)</p>	<p><u>통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토지 조성·개발의 경우: 토지면적 및 조성 완료 예정일</u> 2. <u>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공동주택 종류, 세대 수 및 준공 예정일</u> 3. <u>그 밖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u>제5조</u> (현행 제4조의3과 같음)</p>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 인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지체없이 분리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적 사유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였다.

- 먼저,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였다. 이는 법률에서 대표적 분리조치의 예외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피해학생이 사안이 경미하거나 관계회복 등을 원하는 등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 다음으로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방학,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 방과후 등)'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였다. 이는 분리조치의 시행 주체가 학교장인 점을 고려할 때 학교장이 실질적으로 분리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였다.

※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과 범위 등은 「학교안전법」제2조 제4호의 정의를 따름

-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조치를 시행하여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에 예외사유로 규정하였다. 이는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되었으므로 분리조치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분리조치 실시 여부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고, 피해학생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원용연(6539), 팽주만 연구관(689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p> <p>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p>	<p>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u>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u>”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u>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u></p> <p>2. <u>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u></p> <p>3. <u>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u></p> <p>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p> <p>①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p>

현행	개정안
<p>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u>한국희귀의약품센터</u>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p> <p>②·③ (생략)</p>	<p>----- ----- ----- ----- ----- ----- ----- <u>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u> ----- ----- <u>받는데</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학교의 통합운영 추진 과정에서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에 따른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견수렴 절차) 법 제30조제1항의 의견수렴 방법으로 공청회, 설문조사, 그 밖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실태조사 대상)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② 학교의 교직원 배치 현황 ③ 학교의 각종 시설·설비 현황 ④ 학생의 통학 거리 ⑤ 그 밖에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
- (실태조사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 (결과공개)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14일 이상 공개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이해 관계자와의 사전 갈등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과장 이상돈(6526), 박대선 사무관(653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 ④ (생 략) <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56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 수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청회</u> 2. <u>설문조사</u> 3. <u>그 밖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u> <p><u>⑥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u> 2. <u>학교의 교직원 배치 현황</u> 3. <u>학교의 각종 시설·설비 현황</u> 4. <u>학생의 통학거리</u> 5. <u>그 밖에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u> <p><u>⑦ 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u><신설></u>	⑧ <u>관할청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공개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u>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자금 지원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저소득층 학생은 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하고(제33조의4제5항 신설),
 - 학자금 지원 정보에는 학자금 지원 종류,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를 포함(제33조의4제6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 (자료 요청)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를 추가(제33조의7제1항제1호자목 신설)하였다.

※ (사해행위)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해행위로 채무자에게서 벗어난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 동 개정으로 인해

○ 저소득층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제고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 악의적 체납자의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을 방지하여 학자금 지원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최우성(6285), 김재구 사무관(629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1. (생략)</p> <p>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금융기관</u>으로서 제1호의 은행 외의 <u>금융기관</u></p> <p>3. 4. (생략)</p> <p>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u>법 제49조의4</u>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u>수급자</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u>재단이</u>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금융회사등</u>----- ----- <u>금융회사등</u></p> <p>3. 4. (현행과 같음)</p> <p>제33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u>법 제49조의4제1항</u>----- ----- ----- ----- <u>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u> <u>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u>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u> ----- ----- ----- ----- -----.</p>

현행	개정안
<u><신설></u>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u><신설></u>	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u><신설></u>	3.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⑤ 법 제4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이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u><신설></u>	⑥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신설></u>	1. 학자금 지원 종류 및 금액 2. 학자금 지원 자격 3. 학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	제33조의7(자료의 요청 및 갱신) ① -----

현행	개정안
<p>2제1항제1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에 관한 자료: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p> <p>가. ~ 아. (생략)</p> <p><u><신설></u></p> <p>2.·3. (생략)</p> <p>② (생략)</p> <p>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p> <p>② 재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p> <p>-----</p> <p>-----.</p> <p>1. -----</p> <p>-----</p> <p>-----</p> <p>가. ~ 아. (현행과 같음)</p> <p>자. <u>국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u></p> <p>2.·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6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u>」 -----</p> <p>-----</p> <p>-----</p> <p>-----.</p>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해 관련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 요청) 교육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를 추가 (제42조제1항제8호의3 신설)하였다.

※ (사해행위)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

※ (사해행위 취소 소송) 사해행위로 채무자에게서 벗어난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 동 개정으로 인해

○ 악의적 체납자의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을 방지하여 학자금 지원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과장 최우성(6285), 김재구 사무관(629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금융기관</u>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u>금융기관</u>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을 말한다.</p> <p>제42조(자료 요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 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8의2. (생략)</p> <p><신설></p> <p>9.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 ----- ----- ----- ----- <u>금융회사등</u> ----- ----- ----- <u>금융회사등</u> ----- ----- ----- -----.</p> <p>제42조(자료 요청) ① ----- ----- ----- ----- ----- -----.</p> <p>1. ~ 8의2. (현행과 같음)</p> <p>8의3. 「<u>국세징수법</u>」 제25조, 「<u>지방세징수법</u>」 제39조, 「<u>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u>」 제18조 또는 「<u>민법</u>」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u>관한 자료</u></p> <p>9.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